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지 소유자가 산촌체험 및 산림경영을 위해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산촌체험형 쉼터를 임업용산지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담을 완화하며, 부수적 토석채취허가를 위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축소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연구시설에 대해 입목축적 기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며,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임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촌체험형 쉼터의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안 제12조제13항제7호 및 별표 3의3 제8호카목 신설)

- 1) 산지 소유자가 산촌체험 및 산림경영을 위해 임시숙소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인 산촌체험형 쉼터를 임업용산지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2) 산촌체험형 쉼터의 설치조건을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촌에 설치할 것, 400제곱미터 이상의 자기 소유의 산지로서 평균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이고 부지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일 것 및 산촌채류형 쉼터 바깥에 소각시설, 조리시설 등 화기를 다루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등으로 정함.

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 완화(안 제25조의2제8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받은 자가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미 형질이 변경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다. 부수적 토석채취허가를 위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 축소
(안 제32조제2항제3호)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그 토석의 규모가 1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

라. 국가첨단전략사업 관련 연구시설에 대한 산지에서의 입목축적 기준 적용 배제(안 별표 2 비고 제2호 신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산지에서의 지역 지

정 등에 관한 협의 기준 중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산지를 확대함.

마.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임도 활용 허용(안 별표 3 제1호가목 및 나목)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및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등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은 임업인이 자기 소유의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 기준을 완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9. 18. ~ 10.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산촌체험 및 산림경영 지원)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6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마목에 따른 데이터센터 시설(공용·공공용으로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2조제1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산촌체류형 쉼터(산지 소유자가 산촌체험 및 산림경영을 위해 임시숙소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제18조의4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촌체류형 쉼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본문에 따라 연장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까지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

제25조의2제8항 중 “산지전용”을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으로,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을 “이미 형질이 변경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된”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특별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 중 “10만세제곱미터”를 “20만세제곱미터”로 하고, 같
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토석의 규모가 1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지역여건
또는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5조제7항 중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지보전협회
2.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3. 한국산림토석협회[법 제3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같
은 항 제8호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조사·점검·
검사 등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

제52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장은 별표 3의3 제8호가목에 따른 산촌체류형 쉼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요건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지역등으로 지정·결정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기본통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성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군·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으로 구하며, 산불발생·숙아베기·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시·도별 평균성장률을 적용하여 그 산불발생·숙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

별표 2 비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연구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3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설치조건란 중 “부지면적”을 각각 “자기소

유의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가능하며, 부지면적”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 6호의 설치지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설치지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산지
1) 공익용 산 지 가 아닌 산 지
2) 공익용 산 지 (산 지 전용 · 일시사용 제한지역 은 제외 한다) 중 법 제12 조 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산 지 (같은 항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해당 시설의 설치 가 허용 되는 경우로 한

정한다)

별표 3의3 제8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별표 비고 제4호 중 “제1호에서”를 “제1호 및 제8호에서”로 한다.

카. 산촌체류형 쉼터 및 그 부대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 1)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2)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법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같은 항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해당 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으로서 다음의 지역·지구 외의 산지에 설치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붕괴위험 지역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라)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 지역 마)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되거나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한 지역은 제외한다) 2) 400제곱미터 이상의 자기 소유의 산지로서 평균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3) 자기 소유의 산지(산촌체류형 쉼
-----------------------------	--	--

		터를 설치하려는 자가 소유한 모든 산지를 말한다)에 산촌채류형 쉼터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것이 아닐 것 4) 산촌채류형 쉼터의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이고, 부지면적(산촌채류형 쉼터 및 그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이 100제곱미터 미만일 것 5)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할 것.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본문에 따라 건축조례로 연장횟수를 정할 때에는 가설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6) 별표 4 제1호마목10)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설치할 것. 다만, 임업인의 경우 자기 소유의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7)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해당 산지의 산림보호 및 산림경영에 관한 계획을 제출할 것 8) 산촌채류형 쉼터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할 것 9) 산촌채류형 쉼터 바깥에 소각시설, 조리시설 등 화기를 다루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10)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산촌채류형 쉼터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	--	--

별표 4 제1호마목1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법」 제1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으로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4 제2호다목의 세부기준란 3) 본문 중 “150%”를 “150퍼센트”로 하고, 같은 별표 제3호가목의 공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장	1) 공장부지 면적(「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 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을 포함한다)이 1만제곱미터(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상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농공단지에 입주 허가 허용되는 업종의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2)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호마목10)의 도로기준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장부지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할 수 있다. 가) 기존 공장부지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하는 경우는 1회로 한정될 것 나) 기존 공장부지에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의 면적은 기존 공장부지 면적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다)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까지 기존 공장부지와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않을 수 있다.
--	---

별표 4 비고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연구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제2호다목의 세
부기준란 3)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5 제1호타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라목 단서 중 “재생에너지설비는”을 “재생에너지설비
및 풍황계측시설은”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제3호가목의 대상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농림어
업인등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이 설치하는 「농어촌도
로 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도 및 「임
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
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시
설

별표 5 제3호마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축산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축사시
설

별표 5 제3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처.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되는 시설	100	100
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이전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이전지원사업 시 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중앙회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 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이 설 치하는 시설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		

업시행자가 조성하는 같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전문조합, 중앙회가 설치하는 시설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앙회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이 설치하는 시설 7)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이 설치하는 시설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3항에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의 시설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라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 다)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2027년 8월 2일까지 창업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설치하는 제조시설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다음의 시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신축·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 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	--

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農工團地)를 조성하려는 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기 위해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10)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을 위한 사업 부지 11)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설치하는 시설		
---	--	--

별표 5 비고 제3호 중 “시설을”을 “주택 및 그 부대시설(농림어업인의 주택에 부속한 창고·축사·차고·화장실·탈곡장 및 퇴비저장시설을 말한다)을”로 하고, 같은 비고 제7호 중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감면한다”를 “이미 형질이 변경된 산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한다”로 한다.

별표 7 제1호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종전에 채석경제성평가 결과를 제출하여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았던 구역을 포함하여 채석단지를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채석경제성평가의 시추탐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별표 8 제8호가목 단서 중 “경우”를 “경우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12조제13항제7호, 제18조의4제4항, 제31조제2항, 별표 3의3 제8호카목 및 같은 별표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25조의2 및 별표 5 비고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을 위한 협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2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

해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4 비고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자기소유 임도를 이용한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3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채석경제성 평가의 방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석경제성 평가에 관한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 7 제1호나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토석채취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 지정·변경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8 제8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산지의 구분) ①·② (생략)	제4조(산지의 구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③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7.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u>	<u><삭 제></u>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u>특별시장</u>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① -- ----- <u>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u> ----- ----- ----- ----- ----- ----- ----- ----- ----- ----- -----

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 제한) ① ~ ⑤ (생략)

⑥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 설>

2.·3. 삭제

4.·5. (생략)

⑦ ~ ⑫ (생략)

⑬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6의2. (생략)

<신 설>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 제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마목에 따른 데이터센터 시설(공용·공공용으로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4.·5. (현행과 같음)

⑦ ~ ⑫ (현행과 같음)

⑬-----

-----.

1. ~ 6의2. (현행과 같음)

7. 산촌채류형 쉼터(산지 소유

⑧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 받은 자가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해야 한다.

제31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생략)

②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

③ ~ ⑪ (생략)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 (생략)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

⑧ -----

-----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이미 형질이 변경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된
-----.

제31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특별시·통합특별시 -----

-----.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에는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1. · 2. (생략)

3.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10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단서 신설>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ten horizontal dashed lines, typical of primary-ruled notebook paper.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1. · 2. (현행과 같음)

3. -----

20만세제곱미터

. 다만, 해당 토석의 규모가 1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지역여건 또는 사업

<신 설>

② 산림청장은 별표 3의3 제8호
카목에 따른 산촌체류형 쉼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요건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
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지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4141